

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16-90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2016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 및 제24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「구립 어린이집 확충대상 부동산(창전동 439 제보육시설동) 매입 계획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사업의 목적 및 용도

구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지만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며, 이러한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함. 그 사업의 일환으로 창전동 439에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구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함.

3. 사업의 필요성

- 서울시의 「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」 및 구청장 공약 사항인 「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」에 의거 우리구도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히 추진해오고 있음.
- 금년도의 경우 민간·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환신청을 받아 자체 적격심사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어린이집(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)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전환방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함.
- 부동산 매입을 통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 시비보조사업(시비 95%, 구비 5%)으로 적은 구 예산 투입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매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.

- 해당 부동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면공사가 필요없이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 운영이 가능함.

4. 공유재산 취득현황

- 매입대상 부동산 현황

소재지	규모	대지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공시지가 (천원/㎡)	지목	사용현황	용도지역	준공일
창전동 439 제보육시설동	지상1층	483.2	114.5	3,149	대	공동주택	제2종일반 주거지역	'03.11.28.

- 어린이집 운영현황

시설명	소재지 (행정동)	유형	대표자/원장	정원/현원 (명)	보육교직원 (명)
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	창전동 439(서강동) 제보육시설동	민간	박민숙/강순옥	32/30	8

- 기준가격

[단위 : 원]

구분	소재지 (행정동)	개별공시지가 (원/㎡)	대지면적 (㎡)	소계	비고
토지	창전동 439(서강동) 제보육시설동	3,149,000	483.2	1,521,596,800	개별공시지가
건물				62,517,000	시가표준액
계				1,584,113,800	

※ 건물 : 공동주택가격 미공시에 따른 시가표준액 확인(세무1과-13532, '16. 9. 19.)

5. 그간 추진경위

- 2016. 06. 22. :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서 제출(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)
- 2016. 06. 30. :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신청
- 2016. 07. 22. :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개최
- 2016. 07. 29. :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통보(승인)
- 2016. 09. 12. : 제7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(재산취득 적정여부)
- 2016. 09. 30. : 제7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
- 2016. 10. 10. : 제7회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통보(승인)

6.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- 2016년 서울시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(지원금액)

[단위 : 백만원]

시설명	재원별			용도별			
	계	시비	구비	계	매입비	리모델링비	기자재비
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	1,180	1,121	59	1,180	1,160	20	-

※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: 시비매칭사업(서울시 95% : 마포구 5%)

- 시비 : 2016년도 예산 기 확보(1,121백만원)
- 구비 :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(59백만원)

7. 법적 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제18조(구립어린이집의 설치)

8. 향후 추진계획

- 2016. 11.~12 :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계약 체결
- 2017. 02. : 위탁운영체 선정(보육정책위원회 개최)
- 2017. 상반기 중 : 리모델링 공사 시행 등 개원준비
- 2017. 09. : 구립어린이집 전환 개원

위 치 도



위치도 설명	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
--------	------------

현 장 사 진



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(11-1)

(단위 : m², 천원)

구		분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	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	
취	계	토 지				1	1	1,521,596	1	1	1,521,596		
		건 물				1	1	62,517	1	1	62,517		
	기 타												
득	1. 매 입	토 지				1	1	1,521,596	1	1	1,521,596		
		건 물				1	1	62,517	1	1	62,517		
		기 타											
득	2. 교환으로 취득	토 지											
		건 물											
		기 타											
취	분	3. 기타 취득	토 지										
			건 물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취	분	계	토 지										
			건 물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취	분	4. 매 각	토 지										
			건 물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취	분	5. 양 여	토 지										
			건 물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취	분	6. 교환으로 처분	토 지										
			건 물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			기 타										

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11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
001	대	창전동 439 재보육시설동	1 (대지면적:483.2m ²) (연면적:114.5m ²)	1,584,113	2016. 11월 ~ 2016. 12월	구립어린이집 설치	매입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